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방침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기업금융업무	- 법 제 174 조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금융투자업 (고유재산운용업무 포함)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 개월이 지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거래주의 대상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회사를 법 제 133 조 제 2 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 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거래제한 대상 제 1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회사가 거래제한 대상 제 1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 시행령 제 201 조 제 1 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 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 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 서 제외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1. 회사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관련 거래
2. 회사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관련 거래
3. 회사가 주식, 주식 관련 사채권 및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 수행 중인 법인 및 그 상대 법인 관련 거래
5.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매입을 위한 중개·주선·대리·조언등의 업무를 수행중 인 법인 및 상대방인 (지분매입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해당 지분의 발행법인) 관련 거래
6.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특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관련 거래
7. 회사가 보증 · 배서 · 담보제공 ·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관련 거래

8. 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관련 거래
9. 회사를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 법인 관련 거래
10. 기타 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관련 거래

대응방안

- 법령이 정한 세부지침 등에 의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를 제한함

※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규정
2. 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
3.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운영
4. 정보교류통제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5. 이해상충 우려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6. 임직원에게 대한 주기적 내부통제 교육 실시
7. 홈페이지에 정보교류차단 정책 공개
- 8..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적정성 여부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